

원광대학교 의예·의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2025년 7월 3일 개정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사 명

의생명통합적 사고와 인간중심의 품성을 겸비하여 원불교 정신인 제생의세(濟生醫世)를 실천하고, 지역, 국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학인재를 양성한다.

비 전

“건강 사회를 지향하는 생명존중대학”

교육목표와 졸업성과

교육목표	졸업성과	내용
일차 진료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습득한다	기본의학지식	기초분야의 기본의학지식을 활용한다
		임상분야의 기본의학지식을 활용한다
	기본술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병력을 청취한다
		적절한 신체진찰을 시행한다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필수 술기를 수행한다
	의학추론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학적 추론을 한다
	문제해결	의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의사소통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의료윤리	생명존중의 윤리관을 수립한다
		윤리적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의학 발전에 기여할 연구역량을 배양한다	의학연구	연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학연구를 수행한다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태도를 함양한다	전문직업성	자기주도적으로 평생학습을 한다
전문가 리더십을 통해 인류와 보건의료사회에 기여한다		의료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머 리 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은 2022년 10월과 2025년 1월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의과대학 체계, 교수, 학생, 교육평가 등의 여러 항목에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정 개 TF팀을 구성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본부 기획처의 자문, 개정(안) 프로세스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7월 3일 교수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개정본에서는 평가인증기획위원회 규정, 상담실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실제 행정체계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오독의 여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의 책임과 활동에 대한 평가단의 내용을 수용하여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에 참여해주신 TF팀(이명수 교무부학장, 김영전 교육부학장, 송현옥 학생부학장, 오태훈 의학과장, 원형선 의학교육혁신센터장, 최정우 진료능력개발센터장)님과 실무를 담당해주신 조혜미 담당관, 황진원 담당관님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7월

의과대학장 김민선 합장

목 차

1.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운영 규정	1
2. 발전위원회 규정	18
3.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21
4. 예산심의위원회 규정	24
5.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26
5-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30
6. 학생선발위원회 규정	37
7.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규정	39
7-1. 학생건강·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46
7-2.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정관	48
7-3.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지급기준	53
8. 졸업후교육위원회 규정	56
9. 글로벌교류위원회 규정	58
9-1. 글로벌교류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60
10. 질관리위원회 규정	66
10-1. 성과기반교육평가단 운영 규정	69
11. 평가인증기획위원회 규정	71
12. 평가인증연구위원회 규정	73
13. 의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75

14. 진료능력개발센터 운영 규정	77
15. 학생상담실 운영 규정	79
16. 의과대학 학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81
17.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규정	86
17-1.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88
18. 실험동물관리위원회 규정	90
19. 의과대학 교수복지회 규정	92
19-1. 의과대학 교수복지회 급여금 항목	95
20. 대학원 의학과 위원회 규정	97
21.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학사운영지침	99

1.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운영 규정

제정 1983. 03. 01.
1차 개정 2003. 03. 01.
2차 개정 2007. 03. 01.
3차 개정 2008. 03. 01.
4차 개정 2014. 05. 01.
5차 개정 2015. 12. 09.
6차 개정 2016. 03. 01.
7차 개정 2018. 04. 03.
8차 개정 2019. 03. 26.
9차 개정 2020. 12. 01.
10차 개정 2021. 12. 29.
11차 개정 2025. 03. 31.
12차 개정 2025. 07.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행정, 인사 및 복무, 위원회 규정에 의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의예과, 의학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제2조(교육목적 및 목표) 의생명통합적 사고와 인간중심의 품성을 겸비하여 원불교 정신인 제생의세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 ①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정신과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교훈에 입각하여 지역,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바른 의료인 양성으로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생명존중대학'을 실현하고자 한다.[개정 2015. 12. 09., 개정 2021. 12. 29.]
- ②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지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 실현'이라는 원광대학교의 건학이념에 근간을 두어, 일차 진료에 필요한 기본능력 습득,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의학발전에 기여할 연구역량,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태도, 전문가 리더십을 통해 인류와 보건의료사회에 기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개정 2018. 04. 03.,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의과대학은 의예과, 의학과로 구성되며, 행정조직으로 의과대학 교학과가 있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각 교실 및 분과에서는 주임교수를 두어 교실 및 분과를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5. 12. 09.,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1. 의예과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분자생물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감염생물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교실로 구성한다.[개정 2015. 12. 09.,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3. 31.]

2. 의학과는 내과학(소화기내과, 췌장담도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외과학(간담췌간이식외과, 유방갑상선외과, 이식혈관외과,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과학, 응급의학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성형외과학, 심장혈관흉부외과학, 피부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비뇨의학과학, 마취통증의학과학, 영상의학과학, 핵의학과학, 진단검사의학과학, 진단병리학과학, 방사선종양학과학, 신경과학, 가정의학과학, 재활의학과학, 외상의학과학 교실로 구성한다.[개정 2018. 04. 03.,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3. 교학과는 의과대학 전반의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졸업 후 교육, 정보, 입학, 예산 등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03. 26.]

4. 의과대학 소속의 다른 학과가 있는 경우 학과별로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거나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제4조(업무분장 및 운영) ① 의과대학 보직: 의과대학 보직자는 학장, 교무부학장, 교육부학장, 학생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과 의학교육혁신센터장, 진료능력개발센터장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1. 학장 : 학장후보추천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구성원의 선거의 의해 추천되어 임명된 자로 의과대학의 교육, 교수, 학사업무, 연구, 행정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행정의「일반행정에 관한 규정」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5. 12. 09., 개정 2019. 03. 26.]

2. 교무부학장 : 의과대학 행정과 연구관련 전반 업무, 교수 및 교학 부분을 총괄한다. 학장 유고시 학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3. 교육부학장 :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고 의학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의과대학의 교육, 학사 등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하며 당연직으로 교육과정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6. 03. 01.,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4. 학생부학장 : 의과대학의 입학 및 학생 업무를 총괄한다. 학생의 입학, 생활, 진로, 자치기구의 관리 및 학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당연직으로 학생선발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5. 의학과장 : 의학과 교육, 학사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직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간사를 담당한다.[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6. 의예과장 : 의예과 교육, 학사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직으로 학생선발위원회 간사를 담당한다.[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7. 의학교육혁신센터장 : 의과대학의 교육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의학교육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를 수행한다. 당연직으로 질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25. 07. 03.]

8. 진료능력개발센터장 :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의 운영 및 술기 교육의 진행 및 평가 업무,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등의 진료수행 교육의 운영을 담당한다.[개정 2015. 12. 09,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2025. 03. 31.]

② 보직자의 전문성 확보[신설 2025. 07. 03.]

1. 보직자는 해당 분야의 의학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의과대학 운영 역량을 함양할 의무가 있다.[신설 2025. 07. 03.]

2. 의과대학은 보직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 개발 활동의 예산을 수립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5.

07. 03.]

③ 의과대학 위원회 및 센터: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은 생략한다) 발전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생선발위원회, 학생지도·소명위원회, 졸업후교육위원회, 글로벌교류위원회, 질관리위원회, 평가인증기획위원회, 평가인증연구위원회, 의학교육혁신센터와 진료능력개발센터를 두어 운영한다. 각 위원회 및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외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04. 03.,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1. 발전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및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초빙, 재임용, 승진, 상벌,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3.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의 배정, 심의 및 감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 및 학생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 학생선발위원회는 의예과와 의학과 학생선발과 입학정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 학생지도·소명위원회는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 및 상벌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5. 07. 03.]
 7. 졸업후교육위원회는 모의고사 및 국가고시 준비, 졸업생 관리와 졸업 후 교육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8. 글로벌교류위원회는 해외임상실습, 교원 및 학생의 해외 교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9. 질관리위원회는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10. 평가인증기획위원회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관련 사항을 기획하고 총괄한다.[신설 2025. 03. 31.]
 11. 평가인증연구위원회는 증빙자료 관리 및 보고서 작성업무를 포함한 평가 관련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5. 03. 31.]
- [삭제 2025. 03. 31.][삭제 2025. 03. 31.]
12. 의학교육혁신센터는 교육운영 지원, 정책개발, 교육 평가지표와 학생 코호트 관련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25. 07. 03.]
 13. 진료능력개발센터는 의사고시 실기시험 및 술기교육과정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25. 07. 03.]

제5조(회의소집과 의사결정)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항의 회의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각 회의 구성인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해당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주요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2. 09., 개정 2018. 04. 03., 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① 전체교수회의

1. 의예과, 의학과 전체 교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 포함)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개정 2021. 12. 29.]
2. 학기별로 2회씩 연 4회(1월, 3월, 7월, 9월) 개최한다.[개정 2021. 12. 29.]
3. 분기별 위원회 및 보직교수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추인한다.
4. 운영위원회의 및 보직자회의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5. 전체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내용과 변경 사항을 공유한다.[개정 2025. 07. 03.]

② 운영위원회 회의

1. 의과대학 보직자(학장, 부학장, 의예의학과장, 센터장) 및 교학과장이 참석하며 행정직원이 배석한다.[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2.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3. 매주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4. 위원회, 기초의학교수회의, 임상의학교수회의의 주요 심의 내용 및 현안에 대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전체교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교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기초의학 교수회의

1. 기초의학 교실 소속의 교수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2. 분기당 1회로 연 4회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기초의학 교실의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임상의학 교수회의

1. 각 임상의학교실의 주임교수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2. 분기당 1회로 연 4회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상의학 교실의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해당 회의는 의과대학병원장이 주관하는 임상(분)과장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장은 해당 보직자를 파견하여 홍보,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제6조(의과대학 교육과정) ① 의과대학 수업연한은 6년이며, 과정별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09., 2019. 03. 26.]

1. 의예과 교육과정(1, 2학년) : 80학점 이상 이수
 2. 의학과 교육과정(1, 2, 3, 4학년) : 160학점 이상 이수
- ② 의예과 학생은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의학과로 진급이 가능하며, 의학과 학생은 1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신설 2019. 03. 26.]
- ③ 재학년한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5. 07. 03.]
- ④ 의과대학의 학사운영은 학기제로 한다.[개정 2019. 03. 26.]
- 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의 경우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동료,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8. 04. 03., 개정 2025. 07. 03.]
- ⑥ 기타 교과과정 및 졸업사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칙 제3장과 제13장」에 따른다.

제7조(수강신청 및 교과과정) ① 학생은 각 학년도 매 학기 초에 연도별 「원광대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03. 26.]

- ② 의과대학 학생의 매 학기 가능한 이수학점은 20-23학점이며,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경우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신입학 첫 학기에는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 ③ 학생 개인의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인터넷강의)은 학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3.]
- ④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되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교양기초·교양선택으로, 의과대학 전공과목은 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 07. 03.]
- ⑤ 의과대학 학생은 교양필수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동일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9. 03. 26.]
- ⑥ 기타 수강신청 교과목 확인, 변경, 취소, 재수강 및 교과과정 관련 제반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2장과 제3장」에 따른다.

제8조(출석과 결석) ①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에 미달인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25. 07. 03.]

- ② 교원은 출결석 여부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하고, 시험 전에 출석미달 학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 ③ 교원은 종강과 동시에 출석부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미달인 학생을 교무처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 ④ 기타 출석과 결석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학칙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다.

제9조(학생평가의 원칙 및 방법) 학생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각 교과목의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통합교육 책임교수가 진행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타 성적 및 성적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학칙시행규칙 제6장」에 따른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1. 평가의 방법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한다.[개정 2025. 07. 03.]
2. 평가 영역은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 각각 영역별 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식은 필기시험, 구두시험, 보고서 등, 술기는 실습, PBL, TBL, 임상실습모의고사, 임상실습 비디오 촬영 등, 태도는 출석, 발표, 토론 기타 등에 해당된다.[신설 2021. 12. 29.]
 - 나. 기초의학 통합교육 평가는 지식 70%, 술기 10%, 태도 20% 내외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신설 2021. 12. 29.]
 - 다. 임상의학 통합교육 평가는 지식 70%, 술기 10%, 태도 20% 내외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신설 2021. 12. 29.]
 - 라. 임상실습교육 평가는 지식 30%, 술기 50%, 태도 20% 내외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신설 2021. 12. 29.]
3. 과정별로 학점 당 1회 과정 내 형성평가와 매 수업 별 형성평가를 시행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정 참여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5. 07. 03.]
4. 총괄 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성적 확정 전에 안내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는다. 학업성취도 결과는 성적 확정 전 공개한다.[개정 2025. 07. 03.]
5. 책임교수는 수시, 기말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개정 2025. 07. 03.]
6.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성적의 공개 및 정정) ① 학생은 공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성적공개 및 수정 기간 중에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03. 26.]

② 교과목 책임교수는 학생의 성적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에게 성적 산출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성적 산출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적사정 전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신설 2019. 03. 26.]

제11조(진급, 유급 및 제적) 성적(유급) 및 진급사정은 학생지도·소명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교학과장이 참여하여 학기 말에 시행한다. 학생지도·소명위원회는 사정된 사정일람표를 의과대학에 보관한다. 유급 시 해당학기의 모든 취득학점은 무효로 하며, 해당학기부터 다시 이수해야 한다. 기타 진급,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 제9장」에 따른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1. 진급 기준 : 의예과 학생은 의학과에 진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가. 유급대상자가 아닌 자.

나.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의예과 그 기간에 교양필수 및 계열기초 과목 모두를 이수한 자.[개정 2025. 07. 03.]

라. 의예과 그 기간에 영어능력평가인 공인인증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TOEIC 750점 이상, TOEFL 85점 이상, New TEPS 285점 이상)를 취득한 자.[개정 2016. 03. 01., 개정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마.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혹은 일정 봉사활동 시간(30시간)을 이수한 자.[신설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2. 유급 기준 : 의과대학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를 실시하지 않고 유급이 되며, 해당 학기 전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가. 학기별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나. 당해학기 전공필수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다만, 교양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진급은 하되 재학 중 필히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다. 본인이 원할 경우.

3. 제적 기준 : 의과대학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유급대상자가 유급휴학하지 않을 경우.

나. 유급을 연속하여 4회 혹은 통산 6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15. 12. 09.]

다.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학년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라. 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학점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무단결석자).[신설 2015. 12. 09., 개정 2019. 03. 26.]

4. 유급 재심의 : 학생지도·소명위원회는 유급대상자 중 해당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2.0 이상인 자에 한하여 F학점을 받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09., 2019. 03. 26.] 단, F학점 전공과목의 전체 수업시간 중 1/3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신설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5. 유급 및 제적의 통보 : 학생지도·소명위원회는 교학과를 통해 학년지도교수와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게 해당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제12조(학생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 ① 학생은 성적, 유급과 졸업 유예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표 1)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② 일단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 03. 26.]

1.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기타 착오 발생의 원인이 학생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학생지도·소명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유보하고 5일 이내에 학생지도·소명위원회를 소집한다.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개최가 확정되면 소명절차와 소명서 양식을 공지하여 해당 학생에게 알린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④ 학생지도·소명위원회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해당 학생에게 직접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를 통해 착오 등을 확인한다. 학생은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개최일로부터 2일 이전에 소명서(별표1-3)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교과목 책임교수의 착오가 확인될 경우 책임교수는 사유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⑤ 성적, 유급 및 졸업 유예에 대한 재심의가 확정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교학과를 통해 본교 교무처에 알린다.[신설 2019. 03. 26.]

⑥ 성적, 유급과 졸업 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한 소명 과정에 학생과 이해상충이 있는 자(직계, 친인척 등)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9. 03. 26.]

제13조(휴학 및 복학) ① 의과대학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 휴학을 제한한다.[개정 2025. 07. 03.]

② 다만, 입학 학기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에 의한 휴학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진단서(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③ 기타 휴학 및 복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11장」에 따른다.

제14조(장학금 및 장학생 선정) 의과대학 장학금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학금

1. 의과대학 내에 학생 장학 제도를 둔다.
2.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3. 의과대학 학장, 학생부학장 및 각 학년 지도교수로 구성된 학생지도·소명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장학금을 배정한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② 장학생 선정[신설 2019. 03. 26.]

1. 학년별 장학생 선정은 학년 지도교수가 주관한다.
2.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한 자, 가계 사정이 어려운 자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장학생은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학년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 07. 03.]
4. 해당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라 할지라도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한 과목(사회봉사, 영어능력평가, 졸업논문 포함)이라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F학점 혹은 Fail)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교외에서 학생계좌로 별도로 지급받는 장학생의 추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인정한 장학금에 한하여 이중 수혜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장 교원 인사 및 책무

제15조(교원의 신규임용 및 책무)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시기, 임용전형, 연구실적 및 기타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는 원광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4장」에 따른다. 다만 의과대학에서는 책무에 적합한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의 1항과 2항의 항목에 따라 3항의 절차를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 분야, 인원, 지원 자격 및 특성을 별도로 심의한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① 교원의 공통책무

1. 사명과 성과를 숙지하고 학생들이 졸업성과를 성취하도록 교육한다.[개정 2025. 07. 03.]
2. 사명과 비전을 숙지하고 발전계획을 수행한다.
3. 교육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맞게 연구 전문성을 확보한다.
4. 교육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내외 의학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한다.
5. 의과대학 주체로서 교내외 주요 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교내외 학교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② 분야별 책무

1. 기초의학 교원은 기초의학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며 기초의학이 임상의학에 접목시킬 수 있게 교육하며,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1. 12. 29.]
2. 임상의학 교원은 임상의학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며, 전공의 교육과 진료에 참여한다.
3. 의학교육학 교원은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의과대학과 과정별 교육 문제에 관하여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4. 의료인문학 교원은 교내외 의료인문학의 저변확대와 교육 요구에 반드시 참여한다.[개정 2025. 07. 03.]

③ 책무에 따른 신규 임용 신청 절차

1. 기초의학 교원은 각 교실의 요청에 따라 기초의학 교수(교실별 1인) 회의를 거친 후 회의록과 함께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25. 07. 03.]
2. 임상의학 교원은 각 임상학과(분과)의 요청에 따라 병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과 함께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의학교육학 및 의료인문학 교원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회의록과 함께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25. 07. 03.]
4.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각 분야별 요청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에 상정한다.

제16조(교원의 직위 및 임면) ①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의과대학의 교원은 타기관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③의과대학 신입교원의 임명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기획처에 상정 후 원광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교원의 임용기간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직위별 최대 근무기간은 조교수는 8년, 부교수는 10년

(단, 2005년 3월 1일 이전 신규임용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기타 교원의 임용 및 면직 등은 본교「교원인사규정 제3장」에 따른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제17조(교원의 승진, 재임용 및 복무) 교원의 승진, 재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교원인사규정 제5장 ~ 제7장」에 따른다. 다만 의과대학에서는 교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다음의 제1항과 제2항의 항목에 따라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승진

1. 교원의 승진은 매년 2월말과 8월말을 기준으로 근무년수가 승급년한에 달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업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승진요건을 갖춘 교원은 승진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2. 교원은 승진 심사 신청 전 최근 3년 동안의 교내외 교육관련 교수개발 의학교육 연수 실적(연 최소 3시간 이상, 별표 3)을 제출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의 의학교육 연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교무처에 해당 교원의 승진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 03. 01, 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3. 교원은 승진 심사 시 교수회의 참여 실적이 연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 심사 대상자의 교수회의 참여 실적이 최근 2년 연 2회 미만인 경우 교무처에 해당 교원의 승진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8. 04. 03., 개정 2019. 03. 26.]
4. 동일 직위에서의 근무연한이 조교수는 8년, 부교수는 10년을 초과한 자는 승진할 수 없으며, 당연 면직 된다.(단, 2005년 3월 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장」개정 이전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 03. 26, 개정 2025. 07. 03.]
5. 이 외의 교원의 특별승진, 승진요건, 승진절차, 교육실적 및 연구실적 심사는 본교「교원인사규정 제5장」에 따른다.

② 교원의 재임용

1. 교원 재임용 시기는 최초임용 후 2년이 지난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신설 2019. 03. 26.]
2. 교원은 재임용 신청 시 임용 최초 1년 동안 15시간 이상의 교내외 신임교수 의학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별표 3)을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의 의학교육 연수 실적이 임용 최초 1년 동안 15시간 미만인 경우 본교 교무처에 재임용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 03. 01, 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2. 29.].
3. 재임용 교수는 임용 후 교수회의 참여 실적이 연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재임용 대상자의 교수회의 참여 실적이 연 2회 미만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장 및 본교 교무처에 해당 교원의 재임용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8. 04. 03., 개정 2019. 03. 26.]
4. 기타 재임용 심사 및 제한, 재임용 절차 등은 본교「교원인사규정 제6장」에 따른다.

③ 교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신설 2019. 03. 26.]

1. 복무 :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2. 신분보장 : 교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 휴직, 감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가.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 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다. 기타 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정년에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8조(교수 교육 및 전문 역량 지원) [신설 2025. 07. 03.]

- ① 의과대학 교원의 교내외 의학교육 관련 연수의 등록 비용과 출장 비용은 교비로 지원한다.
② 의과대학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내외 연수 및 출장은 본교와 병원의 지원 정책을 준용한다.

제19조(교원의 포상 및 징계) ① 의과대학 교원의 포상은 본교「원광대학교 포상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 03. 26.]

- ② 의과대학 교원의 징계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광대학교의 교원인사과 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과대학은 소속 교원의 사건이나 사고가 「학교법인 원광학교 교원징계 규정」제 5조(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즉시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이나 사고의 내용을 파악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본교 교무처 혹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의과대학 교원의 징계의 절차와 방법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교원징계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 03. 26.]

부 칙

- ① 이 시행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규정, 주임교수에 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일반적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에 대한 일반적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에 대한 일반적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③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는 재임용 혹은 승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에 대한 일반적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는 재임용 혹은 승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 운영규정으로 개칭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에 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에 의거한다.
- ④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혹은 승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다.
- ⑤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포상규정」 및 「학교법인 원광학원 교원징계규정」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 운영규정으로 개칭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에 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에 의거한다.
- ④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혹은 승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다.
- ⑤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포상규정」 및 「학교법인 원광학원 교원징계규정」에 의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 운영규정으로 개칭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아 입학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에 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학칙」 및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에 의거한다.
- ④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혹은 승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다.
- ⑤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일반 규칙은 「원광대학교 포상규정」 및 「학교법인 원광학원 교원징계규정」에 의거한다.
- ⑥ (경과조치) 2019년 3월 26일 개칭된 운영규정은 2025년 7월 3일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운영규정으로 개칭한다.

[별표 1-1]

성 적 이 의 신 청 서

교 학 과	
접수번호	학 인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 성명 ①

1. 상기 본인은 학년도 학기 성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명	학 수 번 호	분반번호	학 점	담당교수명	통지표성적	정 정 후 성 적	
							①

2. 이의신청내용 (학생이 상세히 기재)

<유의사항>

1. 성적이의신청 접수는 성적사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한함)
2.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적통지표 사본을 첨부하고 이의신청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후 아래 서류를 갖추어 교학과에 제출함.

첨부 : 1) 성적이의신청서(단과대학 교학과)

2) 성적확인서(성적단표내역에서 출력) 1부(학생 본인).

3) 담당교수 사유서 1부(담당교수).

4) 출석부(출석부에 기재한 학업성적표 포함) 사본 1부(담당교수).

5) 레포트, 중간, 기말 시험지 사본 각 1부(담당교수) 끝(단과대학 교학과).

년 월 일

[별표 1-2]

퇴학·졸업유예·유급 이의 신청서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

성명

인

교 학 과	
접수번호	학 인

1. 이의신청내용 (학생이 상세히 기재)

<유의사항>

1. 이의신청 접수는 성적사정일로부터 2일이내.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한함)
2.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적통지표 사본을 첨부하고 학과장과 상담후 아래 서류를 갖추어 교학과에 제출함.

첨부 : 1) 퇴학·졸업유예·유급 이의신청서(단과대학 교학과)
2) 성적확인서(성적단표내역에서 출력) 1부(학생 본인).

년 월 일

[별표 1-3] [신설 2025. 07. 03.]

학생 소명서

대학학부(과)학년

학번:성명(인)

교 학 과	
접수번호	확인

1. 소명내용(학생이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별표 2]

담 당 교 수 사 유 서

학부(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내 용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 :

정 정 전					정 정 후				
중 간	기 말	예 습	총 점	평 점	중 간	기 말	예 습	총 점	평 점

년 월 일

학부(과) 과목담당교수 : (인)

[별표 3]

의학교육 교수개발 참여 확인서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예과, 의학과 신입교원은 임용 1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의학교육 교수개발 프로그램(본교 의과대학 자체 프로그램 포함)을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입 교수는 임용 1년 이내에 의학교육 교수개발 교육이수 내역을 증빙서류(접수증 등)와 함께 의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은 매해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교수개발 프로그램(본교 의과대학 자체 프로그램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교수는 최근 3년 이내 의학교육 교수개발 교육이수 내역을 증빙서류(접수증 등)와 함께 의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교육 교수개발 프로그램 이수 내역】

이름		학과		최초 임용일		
번호	연/월/시	프로그램 명	장소	강사	이수 시간	증빙서류 확인
1						
2						
3						
4						
5						
6						
7						
8						
9						

참고)

주)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이수내역은 최초 재임용 심사 시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이수내역은 승진심사 시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2015. 07. 09.

1차 개정 2019. 03. 01.

2차 개정 2021. 12. 29.

3차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계획을 수립, 점검, 이행, 평가, 개선하고 발전기금의 모집과 올바른 운용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설치한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1. 의과대학 사명체계 검토 및 개선
2. 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과대학 발전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점검
4. 단계별 목표 달성 점검 및 피드백
5. 의과대학 발전기금 조성사업
6. 의과대학 발전기금 예산 심의, 집행 및 감사

② 의과대학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점검한다.

1. 1단계 : 발전계획 수립 준비
2. 2단계 : 조사 및 분석
 - 가. 구성원 의견조사 및 발전과제 관련실태 파악
 - 나.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다. 대내외 환경분석
3. 3단계 : 발전계획 수립
 - 가. 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등 전략체계 수립
 - 나. 발전계획 핵심 추진과제 수립
 - 다.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성과지표, 예산투자, 교육과정, 로드맵 등)
 - 라. 자체평가계획 수립
4. 4단계 : 심의 및 확정
 - 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 보고 및 심의
 - 나. 의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보고 및 심의
 - 다. 발전계획 공포
5. 5단계 : 추진 및 점검

③ 의과대학발전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검토 확정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1. 평가결과가 의과대학 발전계획과 세부추진계획 달성정도를 스스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점검

확정한다.

2.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및 권장사항을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기획을 위하여 교수, 동문, 학생, 학부모, 법인 또는 사회 각계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학생대표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07. 03.]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교무부학장, 원광대학교 병원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한다.[개정 2025. 07. 03.]

④ 위원회에는 발전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해 교육, 학생, 교수, 시설설비 및 행정예산 분야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으로 의학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원광의대 발전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원광의대 발전기금 종류) 원광의대 발전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반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발전기금[개정 2025. 07. 03.]

② 지정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등 발전기금의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개정 2025. 07. 03.]

제10조(원광의대 발전기금 사용) 원광의대 발전기금의 사용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해당 기관(교실)의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 ② 학생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나 집기비품 등의 매입, 관리비
- ③ 장학금 지급 (이는 원광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 “교외장학금” 규정에 따른다)
- ④ 교육비는 학생교육과 관련된 초청강연, 산업시찰 및 봉사활동을 지칭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1. 교내외 강사 강의료를 제외한 수당지급 불가
 2. 각종 행사에 따른 간담회비(식비 포함)는 원칙적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5. 07. 03.]
 3.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위해 내방한 관계자 숙박경비는 원칙적으로 본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⑤ 연구관련 비용은 연구를 위한 초청 강연이나 학술대회 참석 및 개최에 따른 경비, 교수의 교육 및 연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모든 경비지원에서 개인적 용도와 이중 수혜는 절대 금한다.
- ⑥ 조성된 발전기금은 아래와 같은 동문, 학부모 초청 행사비나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한 제 경비
 2. 행사와 관련된 기념품, 초청장 및 리플릿 인쇄, 프랑카드 제작
 3. 기타 목적사업이나 행사관련 진행 경비

제13조(원광의대 발전기금 심의) 위원회는 발전기금 사용 심의를 위해 감사 1인을 둔다. 위원회는 연 1회 원광의대 발전기금 사용이 규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심의와 감사를 시행한 후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1. 06. 11.

1차 개정 2015. 09. 01.

2차 개정 2019. 03. 01.

3차 개정 2019. 12. 03.

4차 개정 2021. 12. 29.

5차 개정 2025. 03. 31.

6차 개정 2025. 04. 22.

7차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위원회설치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원의 신규 임용 및 승진제청에 관한 동의
2. 교원의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
3.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대상자 연구업적물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교원 책무 규정 개발, 교원채용 정책 개발
6. 의과대학 내 교실 구성에 관한 동의
7. 의과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 임용과 추천
8. 제 1호 내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 교원의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가.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나. 수업의 성실성 여부
 - 다.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라. 의학교육 연수 참여
 - 마.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9.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 진료영역에 관한 심의[신설 2025.04.22.]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② 위원회는 선출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07. 03.]

③ 위촉위원은 교무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병원장, 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④ 선출직 4인은 위원회에 지원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개정 2021. 12. 29.]

⑤ 선출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구성은 전 위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07. 03.]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장이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의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③ 교수업적평가 진료영역에 관한 업무 시에는 원광대학교 규정에 따라 교학과장이 간사가 된다.[신설 2025.04.22.]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체 교수 10%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 안건에 관련된 소속 교실의 주임교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장의 참석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9월 1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당연직인 학과장은 해당학과(의예·의학과/간호학과/작업치료학과로 구분)의 사안에만 참석 의결권을 행사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12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예산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편성 및 요구서 작성
2. 예산 분배 및 조정
3. 예산 집행 심의
4. 예결산 심의 결과보고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은 의예과장, 의학과장을 포함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학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25. 07. 03.]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개정 2025. 07. 0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교실의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예산 편성 관련 회의 소집 전, 각 교실에서는 예산 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고, 회의 이후 의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을 완료한다.[신설 2025. 07. 03.]

⑥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관련 위원회의 예산은 평가인증 기준의 최소 금액을 확인하여 필수로 배정하여 집행한다.[신설 2025. 07. 03.]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1995. 03. 01.
개정 1996. 02. 01.
개정 1999. 03. 01.
개정 2012. 07. 13.
개정 2012. 09. 19.
개정 2015. 08. 26.
개정 2017. 04. 24.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 개발 및 개정
2. 졸업성과 및 시기성과 설정 및 개정[개정 2021. 12. 29.]
3. 통합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
4. 임상실습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5.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6. 교육평가체제에 따른 교육실행[개정 2025. 07. 03.]
7. 교육과정 시행세칙 개정
8. 기타 교육과정 관련 학사 운영사항(교과목 신설 및 변경, 수업계획서 관리)
9. 기타 교수법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심의 사항[개정 2025. 07. 03.]

제3조(권한과 책임)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5. 07. 03.]

1.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교육과정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
 - ② 교육과정 내부 및 외부평가를 실시 후 개선 요구
 - ③ 교과과정 개선에 필요한 자료 요구
 - ④ 책임교수 회의체 소집
 - ⑤ 교육프로그램의 변경과 편성 변경
2. 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 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② 교육과정 세칙 개정

- ③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
- ④ 기타 과정별 개선 요구사항의 반영

제4조(구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위원,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③ 교육부학장, 의학교육혁신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④ 위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1. 12. 29.]
- ⑤ 추천위원은 학생위원 1인 이내, 행정직원 위원 1인 이내로 학생회 및 교직원 대표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⑥ 위원회는 교육과정, 교수법, 학생평가 및 교육평가의 방법을 개발할 때, 관련 분야에서나 실무 경험 3년 이상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Phase1, Phase2, Phase3) 및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해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소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실행 및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④ 각 소위원회의 역할은 시기별 책임교수 협의체의 역할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 07. 03.]
 - 가. 교육과정소위원회(Phase1) : 신체 및 질병에 대한 기본의학 지식 및 생명윤리에 관한 과정 계획서 평가, 교육환경 적절성 평가, 교육과정 평가, 학습성과 성취 평가 및 기타 교육과정 세부 요소를 수행한다.
 - 나. 교육과정소위원회(Phase2) : 질병에 대한 임상의학 지식, 술기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논의, 임상의학 학습성과 개정, 교육과정 수업계획서 작성 및 배포, 교육과정 적절성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교육과정소위원회(Phase3) : 학생인턴실습, 지역사회실습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실습지침서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관장 및 예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매해 필수예산으로 책정되어 반드시 교육개선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25. 07. 03.]

② 예산의 일부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책정, 지출, 결의 등과 관련한 사무는 행정직원 위원이 담당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년 2월 1일)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사위원회는 1996년 2월 1일 교육과정위원회로 개칭한다.

부 칙 (199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7월 1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9월 1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8월 26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4월 24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6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2. 07. 13.

개정 2017. 04. 24.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12조에 따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학)과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에 따라 편성된 기초의학, 임상의학 및 의료인문학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각 통합교육과정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2조(원리와 원칙)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토대인 수행, 경험, 학생, 평등과 안전의 원리에 따라 통합의학, 문제(증상)표현, 학생중심, 인성강조 및 상호작용 촉진의 교육 설계 원칙을 토대로 운영한다.

1. 교육내용 : 수행의 원리

성과기반의 수행은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전통적 교육방식인 강의중심의 일방향 수동 제공형태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졸업생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량을 미리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적인 학습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의학교육 : 기초, 임상 교육과정은 계통별 통합을 원칙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나. 문제(증상)표현 교육 : 임상 교육과정에는 문제(증상)기반, 진료수행 과정을 포함한다.

다. 학생중심교육 :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일차 진료 의사의 수행 수준을 학생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인성강조교육 : 봉사, 사회적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료인문한 과목에서 인성강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마. 상호작용 촉진 : 수행 수준에 대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피드백을 제공한다.[개정 2025. 07. 03.]

2. 교수방법 : 경험의 원리

경험촉진의 원리는 수동적인 전달방식에 의한 학습을 지양하고, 학생이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활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나. 실험실습 및 술기 교육은 지식습득, 관찰, 모형 실습의 경험 수준 단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 실습단계에서는 학생이 진료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도입한다.

라. 의료인문학 과정에는 전문직업성, 의료윤리, 의료법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사례분석, 모의활동 등 학생의 직간접 경험과 성찰이 반영되도록 한다.

마. 의학연구과정은 학생들이 실제 연구설계, 연구진행, 결과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구성한다.

3. 학습선택 및 도구 : 학생중심교육

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 요구가 반영된 교양 및 전공 선택과목을 운영한다.

나. 학생들은 수강 신청 전 미리 수업계획서를 확인하여 과정 내용 및 방법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다. 학생들은 웹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자간 학습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및 수행 수준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습조력을 받을 수 있다.

4. 학습환경 : 평등과 안전

가. 학생들은 성별, 종교, 인종,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의과대학은 학생과 교원의 개별적,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지원한다.

다. 연구실 실험실습 과정은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5. 07. 03.]

라. 임상실습 교육과정에는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통합교육과정) ① 통합의학교육과정은 기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유사 교과목을 장기-계통을 중심으로 통합한 단위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의예과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적용되며 기초-기초, 기초-임상 수평 및 수직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강의 시간은 학점 당 16-20시간, 실습은 학점 당 32시간-40시간으로 한다.[신설 2019. 03. 01.]

2. 단위 교육과정별로 책임교수는 학장이 임명한다.

3. 의료인문학 교과목은 “환자-의사-사회”과정으로 통합하여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한다.

4. 성취도 평가는 최소 2-3주 간격, 또는 단위 과정 종료 직후 시행한다.

5. 단위과정 평가 문항 수 및 성적 비중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학업성취도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병행하며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7. 시기성과 구분[신설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가. 기초단계 (Phase 1) : 의예과 2학년 1학기부터 의학과 1학년 1학기까지 신체 및 질병에 대한 기본의학 지식 및 생명윤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나. 임상단계(Phase 2) : 의학과 1학년 2학기부터 의학과 2학년 2학기까지 질병에 대한 임상의학적 지식, 술기 및 태도를 습득하는 통합교육과정이다. 이시기 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가 포함되며 대외평가로 기종평과 임종평을 시행하면서 자체평가는 자체개발 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성과를 파악한다.

다. 임상실습단계(Phase 3) : 의학과 3학년에서 의학과 4학년까지 임상실습 과정이다. 시기 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가 포함되게 대외평가로 임종평, 충청전라 5개 의과대학 모의고사와 자체개발평가는 임상실습모의고사, 임상수기 비디오 촬영, 자체개발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성과를 파악한다.

제4조(책임교수) ① 책임교수는 단위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반 회의의 회무를 주관한다. 회의는 수업 4주전에는 교수학습법, 형성평과와 총괄평가에 대한 학생평가, 수업시간 순서 및 배정, 지난학기 학생평가 결과 반영 등에 대한 회의와 수업 종료 3주에는 수업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형성평가 등과 함께 과정 성과를 파악하는 회의를 진행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② 책임교수는 해당 단위 교육과정 참여교수들의 자율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추천되며 학장이 임명하고,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과정 운영과 관련한 책임교수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07. 03.]

1. 단위 교육과정의 과정계획서 작성

2. 단위 교육과정의 일일수업시간표 작성 및 제출
3. 단위 교육과정의 출석부 관리 및 제출
4. 단위 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및 전산 입력
5. 단위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실시
6. 단위 교육과정의 CQI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입력
7. 단위 교육과정 수업 편성과 교수자 선정과 변경
8.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추천 권한

④ 책임교수는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3.]

제5조(의료인문학)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은 환자의사사회 과목으로 의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통합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환자의사사회 교과목은 전문직업성, 의사학, 의료 의사소통, 통합의학, 의료와 법, 의료와 사회, 의료윤리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매 학년 하나 이상의 과정을 학기 내 블록제로 운영한다.
2. 각 과정의 책임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환자의사사회 책임교수는 연 1회 이상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를 시행한다.
4. 앞서 언급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은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준한다.

제6조(임상실습) ①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의학과 3학년부터 4학년 기간 동안 최소 52주 이상 실습한다.

② 임상실습의 시간은 1학점당 1주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상실습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1. 임상실습은 핵심과, 특과필수, 특과선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가. 핵심과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개정 2021. 12. 29.]
 - 나. 특과필수 : 신경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 다. 특과선택 :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라. 임상실습은 외래실습이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핵심과의 외래 실습 비중은 25% 이상으로 한다. 응급의학과는 100%로 간주한다.
 - 마. 선택실습 : 임상실습 및 의학연구 과정 중 학생의 선택에 의해 특정 과정의 심화 혹은 확대의 최소 2주 이상 시행하며, 실습 기관, 장소는 학생의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책임교수는 선택실습 사전에 학장 명의의 협조공문과 학업평가서를 학생을 통해 선택실습기관장 및 교육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학년 지도교수가 선택실습 책임교수를 맡는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2. 임상실습은 과별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실습성과를 설정하고, 도달 유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적에 반영한다.
3. 의학교육혁신센터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임상실습지침서를 제작한 후 실습 시작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포한다.[신설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가. 각과별 환자 안전관리
 - 나. 임상실습 책임교수 및 교육담당 전공의
 - 다. 임상실습성과 - 핵심적인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
 - 라. 최소한의 필수 환자군

- 마. 실습일정표 - 외래 25% 이상
 - 바. 기본술기 - 학생이 1회 이상 수행해야 할 술기
 - 사. 관찰술기 - 학생이 1회 이상 관찰하여야 할 술기
 - 아. 평가방법
 - 자. 피드백 시기, 방법, 내용, 횟수 등
4. 임상실습성적은 과별 실습과 학기말 평가(핵심과 및 학점이 부여된 기타 과목)를 통합하여 반영한다.
 5. 해외임상실습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해외임상실습은 자유선택실습으로 간주한다.
 - 나. 의학과 3, 4학년 지도교수는 프로그램별 희망자, 일정, 보강 계획이 기록된 명단을 학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1. 12. 29.]
 - 다. 학장은 내용을 해당 지도교수에게 공지한다.
 - 라. 학생은 결석하게 될 과의 책임교수와 상의하여 방학과 자유선택실습 기간을 이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 마. 학생은 해외실습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임상실습 학생의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진료범위는 예진, 신체검사, 의무기록작성 및 다음의 항목에서 언급하는 술기들을 포함한다.
 - 가. 기본술기 :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침습도 및 위험성이 낮은 간단한 술기로 활력징후 측정, 심전도, 정맥채혈(검사 및 혈액배양), 동맥혈가스분석,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관 삽입, 환부 소독 및 봉합, 모형을 이용한 술기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5. 07. 03.]
 - 나. 관찰술기 :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이 1회 이상 관찰하여야 할 침습도 및 위험도가 높은 술기로, 위험도에 따라 다음 2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항목은 각 임상 과에서 정한다.
 - 1) 지도교수나 전공의 지도감독 하에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술기: 복막천자, 늑막천자, 정맥주사, 외부 심장마사지, 연조직 세침흡입술 및 도말, 근육주사, 신경전도 검사, 기도삽관(전신마취 하), 척수천자 등
 - 2) 관찰만 가능한 술기: 기도삽관, 늑막 생검, 상하부위장관 내시경, 기관지내시경, 중심정맥도관 삽입술, 심낭천자,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골수천자, 조직검사 등
 7. 임상실습 책임교수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8. 실습교육담당 전공의는 지도교수를 도와 학생실습 수행교육에 참여한다.

제7조(학생인턴제) ① 학생인턴은 예비의사로서의 환자 진료 능력 배양과 수기를 학습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며 폭 넓은 의료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학생인턴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1. 인턴 실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를 포함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과를 우선으로 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임상, 기초, 의료인문학 교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인턴 실습은 본교 병원과 학교로 제한한다.[개정 2025. 07. 03.]
2. 실습 과목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하여 학생 1인 당 지도 교수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의 학생이 지도 교수를 중복선택 시 책임교수가 조율한다.[개정 2025. 07. 03.]
3. 학생은 4주 동안 하나의 임상, 기초, 의학교육, 의료인문학교실을 선택한다. [개정 2025. 07. 03.]
4. 학생인턴제 교육 시기는 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5. 학생인턴의 역할은 현재 임상의 인턴의사의 역할에 준하여 입원환자 기록지 작성, 경과기록지 작성, 모의 처방, 환자 처치, 수술 참여, 당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련과의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진료 실습 이외 의학연구 및 기타 인턴 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각 과정의 인턴 혹은 대학원 기초 수준에 맞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교실 혹은 센터의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개정 2025. 07. 03.]

6. 학생은 실습기간 동안 자신의 학생인턴 경험을 성찰일지 형태로 증빙한다.[개정 2021. 12. 29.]

7. 담당교수는 학생인턴의 주어진 형식에 맞게 학생인턴의 수행을 평가한다.(별표 1, 2)

8. 학생인턴의 최종 평가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부여하며, 평가 내용은 성찰일지 평가, 학생인턴 실습 평가표, 담당교수평가, 발표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1. 12. 29.]

제8조(운영 및 예산) ① 매학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위 교육과정 책임교수들은 학습성과, 수업내용, 순서, 시간, 수업방법, 학업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방법 등을 기술한 단위 교육과정 수업계획서를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제출된 각 단위 교육과정 수업계획서를 검토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각 단위 통합교육과정별 학습성과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④ 교육과정 개선, 평가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본 세칙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4월 24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6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인턴 실습 평가표

학생이름		선택인턴 실습과	
학번		담당교수	(서명)

영역	평가내용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진료 연구	- 외래, 수술, 시술, 판독 등 참여 -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 등	5	4	3	2	1
지식	자기주도적인 보충학습	5	4	3	2	1
술기	술기 연습 숙련도 향상	5	4	3	2	1
태도	성실, 보고, 비밀유지, 의사소통 등	5	4	3	2	1
출석	출석 및 정해진 시간 엄수	5	4	3	2	1
총점		(/ 25점 만점)				

총평 교수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우수실습 <교수-학생> 베스트 커플상 선정에 활용됩니다. 학생실습에 대한 총평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별표 2]

학생인턴실습 보고회 팀 평가

다음의 내용은 실습을 마친 후 시행하는 <인턴실습보고회>에서 평가위원교수님께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실습과에서는 표기하지 마십시오.

번호	학생명	실습과	담당교수	실습의 충실도(10)	실습의 효과성(10)	포트폴리오(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6. 학생선발위원회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발
2. 학생 선발 위원 추천 및 활동[개정 2025. 07. 03.]
3. 학생 선발 과정의 평가 및 개선안 개발
4.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②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예과장, 의학교육학 교수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5. 03. 31.]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내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때 교내외 자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 위원회의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부 위원은 연임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5. 07. 03.]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의예과장이 된다.[개정 2025. 07. 03.]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제8조(제척사유) ① 위원회의 의안 중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이 있을 때에는 그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와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학장을 통해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심의·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규정

제정 1999. 03. 01.

개정 2013. 03. 01.

개정 2015. 09. 0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도·소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의 생활, 진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권리, 복지,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4.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학생상호간의 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포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성적, 유급, 졸업 유예 및 징계조치에 대한 결정과 학생의 소명에 관한 사항
단 의학과 3학년 성적사정 및 4학년 졸업사정은 졸업후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5. 07. 03.]
7.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도교수) ① 학년 별로 2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둔다.

- ② 지도교수는 학장이 위촉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해당 학년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지도교수는 해당 학년의 학생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지도해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부학장, 학년지도교수를 포함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내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교내외 자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학생을 학생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때 학생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부학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 학년 지도교수는 필요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관련된 최소 인원으로서 구성된 축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사안(부당 행위나 학생 간 폭력 행위 등)의 경중에 따라 본교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및 지도) ① 학생 상담은 정기상담 또는 소속 학생의 상담 신청에 의한 수시상담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개정 2025. 07. 03.]

③ 각 학년 지도교수는 학년 대표 학생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각 학년 지도교수는 해당 학년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하여 학생상담일지(별표 1)로 기록한다.

⑤ 각 학년 지도교수는 해당 학년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하여 학생상담일지로 기록한다.

⑥ 각 학년 지도교수는 해당 학년 유급 대상학생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생상담일지로 기록한다.

⑦ 상담 중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상담사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 자문을 요청한다.[신설 2025. 07. 03.]

⑧ 각 학년 지도교수는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해 학생 행동규정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다.(별표 2, 3, 4)[신설 2025. 07. 03.]

⑨ 부당행위로 인한 보고체계는 사안에 따라 학년지도교수나 평생지도교수를 통해 학생지도·소명위원회나 본교 인권센터에 보고한다.[신설 2025. 07. 03.]

⑩ 피해학생의 보호방안은 본교 인권센터에 준한다. [신설 2025. 07. 03.]

제10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전체교수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9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4월 0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예과/의학과 학생상담일지

20 년도 의예과/의학과 ()학년 학생상담 일지

일시		장소	
상담학생			
상담교원			
분류	1. 학업 2. 학교생활 3. 진로 4. 기타()		
내용			

[별표 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행동규정[개정 2025. 07. 03.]

〈원광인의 몸가짐, 마음가짐〉

1. 원광인은 의과대학 선배, 후배, 동료 학생을 의업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존중합니다.
2. 원광인은 나에게 의학과 의료를 가르쳐준 모든 분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3. 원광인은 나의 학업을 지원하고 지지한 가족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4. 원광인은 우리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살펴 준 학교와 교직원의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5. 원광인은 성실한 태도와 바른 정신으로 학업에 집중하여 학습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합니다.
6. 원광인은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로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실천합니다.
7. 원광인은 의료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할 모든 보건의료인을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8. 원광인은 언제나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9. 원광인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추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오늘 나는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원광인 모두는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의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도·소명위원회

[별표 3]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행동강령〉

1. 학습윤리

- 1) 나는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 2) 나는 수업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출석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나는 수업에 정직한 자세로 배움에 임하여 좋은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나는 시험 중에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5) 나는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성별, 나이, 인종, 문화, 종교, 정치적 성향, 경제력,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등의 어떠한 이유라도 타인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6) 감염 시기에 교수, 동료, 선후배, 의업 동반자에게 전파 예방 및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 7) 나는 어떠한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범죄 등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 8) 그룹 과제물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연구윤리[개정 2025. 07. 03.]

- 1) 나는 원광대학교 와 원광대학교 병원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연구를 실행하겠습니다.
- 2) 나는 연구활동의 보고서 작성 시 표절, 중복제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임상실습윤리

1) 교수, 동료, 선후배, 타부서 직원과의 관계

- 1) 나는 임상 실습 기간에 교수님, 동료, 선후배, 타부서 병원 직원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2) 나는 임상 실습 기간에 예의가 바른 용모와 언행을 하며, 병원 내 감염 예방에 참여하겠습니다.

2) 환자와의 관계

- 1) 나는 임상 실습 기간에 환자의 사생활, 권리, 위엄을 존중하겠습니다.
- 2) 나는 임상 실습 기간에 습득한 환자 비밀, 의무기록 등을 인터넷 및 사적인 모임 등에서 발설 및 유출하지 않겠으며, 다만 학술 목적에 이용할 때는 환자 정보는 보호하겠습니다.
- 3) 나는 환자의 성별, 나이, 인종, 문화, 종교, 정치적 성향, 경제력,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등의 어떠한 이유라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4. 의학전문윤리

- 1) 나는 의학발전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나는 사회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 3) 나는 밝고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기약물, 건강유해 물질 등을 퇴치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학습, 연구, 임상실습윤리에 대한 명예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학년:

학번:

학생 이름:

(서명)

날짜:

년

월

일

[별표4]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사 행동강령 선언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000 외 00명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화이트코드 행사에서 흰가운, 청진기, 학생의사이름표 등을 착용하면서 학생 의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임상실습 전에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의학과 의술을 배워 좋은 의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실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임상실습 지침, 병원의 규정, 안전관리, 감염지침, 전산규정 등을 준수하고 청결한 복장 착용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교수님과 동료에게 조언과 자문하며, 정당한 지시와 충고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상실습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 병원직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환자의 사생활, 권리 및 위엄을 존중하며, 환자 진료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환자를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이바지하는 따뜻한 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성별, 나이, 인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등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의사로서 임상실습과정에서 얻은 좋은 의학지식을 동료 및 후배들과 공유하며, 팀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번:

학생 이름:

(서명)

7-1. 학생건강·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도·소명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2조(건강 및 안전관리자) ① 교학과 행정실 소속 1인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로 둔다.

② 교육병원은 병원 소속 1인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이하 병원건강·안전관리자)로 둔다.

제3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무) ① 학생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임상실습 전 우리나라 성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다만, 교육병원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한다.

③ 임상실습 전 남/여학생의 공통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CBC D/C, AST, ALT, creatinin,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HBs Ag, anti-HBs Ab, HAV Ab이며, 여학생은 rubella IgG 등을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25. 07. 03.]

④ 건강검진 결과중 HAV IgG, HBsAb, rubella IgG 각각 음성인 경우는 각각 감염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하며, 기타 비정상적인 결과가 있을때는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제4조(안전의무) ① 학생은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에 가입하여 수학기간 내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② 학생은 원광대학교 '재난및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임상실습학생은 실습 전 손위생 및 보호구 사용, 주사침 자상 예방, 주사침 자상 및 감염성 질환 노출 시 절차,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임상실습학생은 교육병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자문의)

①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장은 학생지도·소명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 항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3.]

제6조(비용)

① 학생이 수학기간 중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 및 환경위험에 노출된 경우, 검사 및 치료에 따른 진료비는 건강공제센터에서 환급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건강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정관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학생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상실습학생의 경우 교육병원이 요구하는 건강검진과 예방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임상실습학생이 실습과 관련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병원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의무 및 절차)

- ① 건강 및 안전관리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학년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② 임상실습학생이 감염 및 환경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처치 후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병원 감염관리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단, 주말 또는 비정규 근무시간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에 감염관리실에 보고한다.
③ 교육병원 감염관리실은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 07. 03.]
④ 학년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소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 07. 03.]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정관

제정 1992. 06. 09.

개정 2020. 09. 02.

개정 2022. 0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이하 "공제센터"라 한다)라 부른다.〈개정 '15.07.30, '18.07.26.〉

제2조(위치) 공제센터는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15.07.30, '18.07.26.〉

제3조(목적)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며, 예방학적 검진을 실시하여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07.30〉

제4조(사업) 공제센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18.07.26.〉

1. 보험급여
 - 가. 요양급여
 - 나. 분만급여
 - 다. 장제급여
2. 공제센터의 목적을 수반한 의료 및 복지시설의 운영
3. 기타 관련된 사업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정관에서 학생이라 함은 원광대학교 각 대학의 학생 및 대학원생(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말한다.〈개정 '20.09.02〉

제2장 공제센터회원

〈장제목 변경 '18.07.26.〉

제6조(자격취득) 피보험자(공제센터회원)의 자격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센터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제센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한다.〈개정 '15.07.30, '18.07.26.〉

제7조(임의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제센터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18.07.26, '20.09.02〉

1. 학부 휴학생(공제센터회원이 된 학기에 질병이 발생되어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임의가입 가능)〈개정 '03.7.25, '20.09.02〉
2. 기타 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의1(질병휴학) ① 공제센터회원이 된 학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휴학할 경우 질병휴학한 해당 학기만 공제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8.07.26.〉

- ② 질병휴학 후 복학 시 공제센터회비를 납부해야 공제센터회원이 된다.
- ③ 임의가입에 의한 질병휴학자 공제혜택은 1회로 제한한다.
- ④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항신설 '20.09.02〉

제8조(자격상실) 공제센터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8.07.26.〉

1. 사망했을 때
2. 졸업, 제적, 자체 휴학 등으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휴학한자, 또는 정규학기 초과자(단, 질병휴학자는 제외)

3. 정한 기일 내에 공제센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공제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체면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15.07.30>
5. 공제센터가 해산될 때

제3장 기관<전면개정 '04.7.12>

제1절 임원

제9조(임원) 공제센터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개정 '18.07.26.>

1. 이사 11인이내(이사장 포함)
2. 감사 3인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2년
2. 감사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학생성공처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직제변경 '22.02.25>

②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총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계전공 교수로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1인
2. 의료전공자로 이사장이 위촉하는 1인
3. 총학생회장이 위촉하는 학생대표 1인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센터를 대표하며, 공제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8.07.26.>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공제센터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검열하고 의결사항의 집행과 회계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공제센터의 임원을 출석시켜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07.30, '18.07.26.>

② 공제센터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18.07.26.>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공제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15조의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소집통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 3일 전까지 소집통고서와 의안을 각 이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정관변경의 경우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5.07.30〉

제19조(회의록)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재적이사수와 참석이사수
3. 회의내용
4. 의결사항
5. 의장 및 참석이사의 서명날인

제20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이사회 간사는 학생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18.07.26.〉

제21조(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 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18.07.26.〉

1. 이사장, 보건진료소장,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1인, 학생이사 1인.
2. 위원장은 보건진료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제센터회원의 자격심사
 2. 보험료 지급금액의 산정
 3. 치료방법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공제센터회원의 이의 제기 사항〈신설 '15.07.30〉
 6. 임의가입자(「건강공제센터 정관」 제7조에 해당하는 자)〈신설 '15.07.30〉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과장으로 한다.

제4장 직 원

제22조(직원) 공제센터 재정으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8.07.26.〉

제23조(보수 및 여비) ① 공제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한 공제센터 이사 및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07.26.〉

② 직원의 보수는 공제센터 예산으로 지급하며, 급여기준은 본 대학교 직원보수규정에 준한다.〈개정 '15.07.30〉

제5장 공제 급여

제24조(보험 급여기간 및 범위) ① 공제센터급여는 피보험자 자격취득 이후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 한다.〈개

정 '08.12.4, '18.07.26.〉

② 공제센터급여는 공제센터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있는 공제센터회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08.12.4, '15.07.30〉

제25조(보험급여의 종류) ① 공제센터급여, 분만급여, 장제급여, 기타 필요한 급여로 한다.〈개정 '08.12.4, '18.07.26.〉

② 공제센터급여의 종류일지라도 암, 신부전증, 심장수술 및 선천성 기형 등은 공제센터의 예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급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한다.〈개정 '08.12.4〉

제26조(공제센터급여기준) 공제센터 급여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 준한다.〈개정 '08.12.4, '18.07.26.〉

제27조(의료기관) ①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보건소제외)을 지정병원으로 한다.〈개정 '08.12.4〉

② 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현 국민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공제센터급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공제센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12.4, '18.07.26.〉

1. 진료비의 총액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선천적 질환이나 성형 등의 진료
3. 교통사고나 폭력 장애로 인한 진료(상해, 자해도 포함)
4. 기타 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에서 공제센터비 급여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진료

제6장 재 정

제30조(재정) 공제센터는 다음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개정 '15.07.30, '18.07.26.〉

1. 가입비 및 공제센터회비
2. 이자 수입
3. 기타 수입

제31조(공제센터회비) 공제센터회비는 공제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15.07.30, '18.07.26.〉

제32조(공제센터회비의 불환급) 공제센터회원이 납부한 공제센터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될 수 없다. 다만, 해당학기 개시전 자퇴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03.7.25, 개정 '18.07.26.〉

제33조(회계년도) 공제센터의 회계년도는 원광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개정 '15.07.30, '18.07.26.〉

제34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센터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8.07.26.〉

② 공제센터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결산 후 지체없이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며,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제센터회비의 납부기간) 공제센터회비는 등록금 납입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센터회비만의 별도 납부는 추가납부 기간에 납부하여도 공제센터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03.7.25, '18.07.26.〉

제7장 해 산

제36조(해산) 공제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8.07.26.〉

제37조(잔여재산의 처분) 공제센터가 해산하였을 때 청산 잔여재산은 공제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보

형제도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한다.<개정 '15.07.30, '18.07.26.>

부 칙

-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보험법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 ② 이 정관에 준한 시행세칙과 보험급여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 ③ 이 정관은 199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④ 공제센터급여는 1992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부 칙(2003. 7.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4)

이 정관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7.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의 명칭 및 용어는 이 개정 정관에 의한 명칭 및 용어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9.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없는 사항은 학부생, 대학원생 동일 적용한다.

부 칙(2022. 02. 25, 직제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지급기준

〈정관변경 '18.07.26.〉

제정 1992. 06. 09.

개정 2020. 09.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이하 “본 공제센터”라 한다)정관 제26조에서 위임된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07.30, 정관개정 '18.07.26.〉

제2조(급여의 절차) 공제센터회원에 대한 급여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본 공제센터 급여기준에 정한다.〈정관개정 '18.07.26.〉

제3조(회원의 구분) ① 일반회원 : 부모나 본인이 기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 공제센터만 가입한 회원
〈정관개정 '18.07.26.〉

② 이중혜택 회원 : 부모나 본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 공제센터에 가입한 회원

제4조(이중혜택 회원의 자격)〈삭제 '08.12.4〉

제2장 공제센터급여 기준

제5조(공제센터급여 범위) 본 공제센터의 보험급여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개정 '08.12.4, 정관개정 '18.07.26.〉

1. 진료비의 부담〈개정 '08.12.4, '20.09.02〉

가. 학부생 진료비의 부담(학기당 200만원 까지)

나. 대학원생 진료비의 부담(학기당 100만원 까지)

2. 공제센터급여

가. 일반회원 :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해당사항 없어 삭제함〈개정 '08.12.4, '15.07.30, '20.09.02〉

나. 학부생 이중혜택회원(건강보험 가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약제비 포함 70% 지급한다(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제외)

- 대학원생 이중혜택회원(건강보험 가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50% 지급한다.(약제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제외)〈개정 '08.12.4, '20.09.02〉

다. 급여 상한액 : 일반회원 이나 이중혜택 회원 진료 시 공제센터 급여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08.12.4〉

3. 〈삭제 '08.12.4〉

4. 분만급여 : 공제센터원이 분만하는 경우 분만급여를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은 분만으로 인한 진료 중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혜택) 〈개정 '07.8.23〉

5. 장제급여 : 공제센터회원이 사망 시 건강공제센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예외로 한다. 〈개정 '07.8.23〉

가.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 기타 수업기간중 교육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 70만원

나. 기타 이외로 사망한 경우 : 50만원

제6조(공제센터급여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급여(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삭제 '08.12.4, 정관개정 '18.07.26.〉

1. 환자의 상태가 계속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달했을 때

2. 단순한 피로 및 권태
3.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백납, 여드름 등)
4.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및 부인과 질환(음위, 불감증,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
5. 예방접종, 건강진단, 시력검사, 안경
6. 마약중독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알콜중독증
7. 이종검수술, 용비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8. 지각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질환
9. 치과의 보철, 부정교합치의 교정,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
10. 교통사고, 폭력, 자해 등으로 치료비 지불책임이 공제센터에 있지 아닐 때
11.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12. 연구목적으로 선정한 환자
13. 국외여행 또는 국외에서 수업중일 때<개정 '08.12.4>
14. 교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을 때<개정 '08.12.4>
15. 기타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개정 '08.12.4>

제3장 공제센터급여청구 및 지급

제7조(청구) 공제센터회원은 진료 받은 후 건강공제센터정관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7.5, '08.12.4, 정관개정 '18.07.26.>

1. 공제센터급여 신청은 진료일의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7.5, '11.09.05>
2. 공제센터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병원 영수증<개정 '02.7.5>
 - 나. 약국영수증(대학원생 해당 사항 없음)<개정 '02.7.5, '11.09.05, '20.09.02>
 - 다. 공제센터 지급금액이 10만원 초과할 때는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7.5, '15.07.30>

제8조(지급) 공제센터회원이 공제 급여를 신청할 때는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08.12.4, '15.07.30, 정관개정 '18.07.26.>

1. 50만원 미만은 확인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02.7.5, '08.12.4, '15.07.30>
2. 50만원 이상일 때 건강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02.7.5, '08.12.4, '15.07.30>
3. 공제센터급여액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다.<개정 '02.7.5>

제9조(타 진료기관 이용시 급여금의 지급)<삭제 '08.12.4>

부 칙

이 지급기준은 199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급기준은 200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5)

이 지급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3)

이 지급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4)

이 지급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이 지급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30)

이 지급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7. 26)

이 지급기준은 건강공제센터 정관 개정에 따라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2.)

제1조(시행일) 이 지급기준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급기준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은 이 개정 지급기준에 의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없는 사항은 학부생, 대학원생 동일 적용한다.

8. 졸업후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20. 12.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후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03.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의사국가고시 실기고사, 지필고사 준비
2. 전라컨소시엄 참여
3. 충청, 호남 5개 대학 국시대책위원회 참여[개정 2020. 12. 01]
4. 의사국가고시 실기모의고사 주관
 - 가. 의사국가고시 실기모의고사 일정수립
 - 나. 의사국가고시 실기모의고사 감독관 선임 및 관리
 - 다. 의사국가고시 실기모의고사 채점
 - 라. 의사국가고시 실기모의고사 결과 분석 및 평가
5. 임상의학종합평가 주관
6. 의사국가고시 필기모의고사 주관
 - 가. 의사국가고시 필기모의고사 일정 수립
 - 나. 의사국가고시 필기모의고사 문항개발
 - 다. 의사국가고시 필기모의고사 채점
 - 라. 의사국가고시 필기모의고사 결과분석 및 평가
7. 의사국가고시 모의고사 결과 분석 보고
8. 졸업예정 성적 부진자관리[개정 2025. 07. 03.]
9. 3학년 성적사정 및 4학년 졸업 사정
10. 졸업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5. 07. 03.]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의학과 4학년 지도교수 혹은 의학교육전문가 중 1인 또는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 07. 03.]

③ 교무부학장, 의학과장, 의학과 3학년, 4학년 지도교수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 12. 01.,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2인 이내를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25. 07. 03]

④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학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수시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글로벌교류위원회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과대학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학생 국제교류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교환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 07. 03.]

②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3학년 지도교수와 학생대표 1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위원은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3.]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학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수시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9-1. 글로벌교류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9. 07. 01.

개정 2021. 12. 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글로벌교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2조(지원 자격) 학생선발에 관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① 선발시점 전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의학과 3, 4학년 학생
- ②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③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적이 없는 학생
- ④ 의과대학 공식 행사에 적극 참여한 학생

제3조(지원자 제출 서류) 학생선발에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①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서(양식 1)
- ② 선발시점 전 학기 성적증명서
- ③ 공인영어능력 증명서(영어능력평가 교과목 이수로 대체 가능), 국제교류에 참여할 국가 언어 능력증명서[개정 2021. 12. 29.]

제4조(선발 절차) 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지원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의과대학 교학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글로벌교류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동점자 발생 등) 면접을 진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조(지원 범위)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료(왕복)의 50%를 지원한다.

제6조(종료시점 선발자 제출 서류) ① 프로그램 참석 시기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법무부 발행)

- ② 해외 임상실습 결과보고서(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양식 2)

제7조(학생 평가) ① 글로벌교류위원회는 해당 국제교류 임상실습기관에 해외 임상실습평가서(Studen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를 전달한다(양식 3).

- ② 해당 국제교류 임상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 대한 해외 임상실습평가서(실습담당교수 서명 및 이메일 주소 필수)를 작성하여 글로벌교류위원회로 직접 회신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 원 서

지원자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한자)	핸드폰		
		(영문)	E-mail		
	학 년		학 번		
	전 학기 평균평점		공인영어 점수		
	참여한 의과대학 공식행사				
지원 실습대학	실습대학		희망 실습과	(1)	(2)
				(3)	(4)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지원이유	지원 동기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다.				
실습계획	실습기간 동안 자신이 실습기관에서 이루고 싶은 학습성과 및 실습계획을 간단히 기술한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_____ (인)

[양식 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결 과 보 고 서

*결과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 제출 원칙

실습학생	성 명		학 년		학 번	
	성 별	남 / 여	휴대폰		E-mail	
임상 실습대학	실습대학			실습 담당 교수	성명	
	실습과명				연락처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학습성과 달성정도	당초 자신이 계획하였던 혹은 실습대학에서 재설정된 학습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기술한다.					
실습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실습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점을 기술한다.					
실습에서 발견한 자기개발 포인트	실습과정을 통해 자신이 더 배워야겠다고 혹은 더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한 점을 기술한다.					

실습활동 일지 (daily activity)	현지에서 수행한 실습내용에 대하여 daily activity를 기록하고 증명 가능한 사진 등을 첨부한다.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간략히 기술 후 개인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가능)
해외 임상실습 활동에 대한 총평	
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후배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년 월 일
 실습학생 성명 : _____ (인)

[양식 3]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Republic of Korea /
dae6753@wku.ac.kr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Student Performance Evaluation

Student information

Name		Institution	
Clerkship	Start:	End:	

Supervisor information

Name		Title	
Institution		Department	
E-mail		Date reviewed	(signature)

Domain	Competency areas	Rating				
		Outstanding		Satisfactory		Poor
Clinical activities	Relationship with patients	5	4	3	2	1
	Physical examination	5	4	3	2	1
	Technical skills	5	4	3	2	1
Knowledge	Self-directed learning	5	4	3	2	1
	Oral or written presentation	5	4	3	2	1
Attitude	Effort	5	4	3	2	1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5	4	3	2	1
	Attendance	5	4	3	2	1

Total score ()

Please comment on the student's performance during clerkship (eg. feedback on his/her strengths, weaknesses and areas needing improvement).

10. 질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20. 12.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과대학 운영의 질적 향상 및 의과대학의 상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인증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석[개정 2025. 07. 03.]
2. 의과대학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
3. 미비 항목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관한 권고
4. 기타 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혁신센터장을 겸직하며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12. 29., 2025. 03. 31.]

- ② 위원회는 위원장, 학생대표,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9., 2025. 07. 03.]
-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업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행정직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제반 사무, 행정업무 및 회의준비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행정직원이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평가 내용 및 방법〉

		교원	학생	위원회
평가 내용	효과	① 지속적 수업 질 개선(과목별 CQI)	③ 시기(졸업)성과 자가평가	⑥ 졸업성과 도구 측정
	효율	② 과정별 개선 논의	④ 교육학습시설 만족도 조사	⑦ 교육예산, 교수개발 실적 평가
	매력		⑤ 강의평가 만족도 조사	⑧ 학생 교육과정 평가
평가 방법	시기 및 방법	① 매 학기, 학습 성과 성취 (웹 정보 서비스)	⑤ 매 학기 과목별 수업평가 (웹 정보 서비스)	
		② 연 1회, 통합과정별 개선 토의	⑥ 윤리, 책무, 의사소통 등 역량평가	
		③ 시기별, 5점 척도로 자가기입 평가	⑦ 연 1회, 예산사용, 교수개발 실적 평가	
		④ 연 1회, 전 학년 학생 대상 설문	⑧ 매 학기, 학년별 초점화 집단 면담	

10-1. 성과기반교육평가단 운영 규정

제정 2020. 11. 17.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질관리 개선을 위한 의학교육 성과기반교육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07. 03.]

제2조(기능)

성과기반교육평가단은 비상시 기구로서 2020년 이후 2년 주기의 소규모 평가, 6년 주기의 대규모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다.

제3조(평가단 구성)

- ① 평가단 단장은 질관리위원장이 맡는다.[개정 2025. 03. 31.]
- ② 평가단은 단장, 교내외 교육전문가 2인 이상,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5. 03. 31.]
- ③ 평가단은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업무)

- ① 단장은 교육평가의 방법과 진행 등의 모든 일정을 주재하고 평가단을 대표한다.
-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평가단의 활동의 실무 사항을 보조하며, 단장 유고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 ③ 행정직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제반 사무, 행정업무 및 회의준비를 한다.

제5조(임기)

- ① 임기는 평가단 위원 위촉 후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평가활동)

- ① 평가단장은 평가 개시 전 평가의 원칙, 평가방법, 평가 일정에 대한 진행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미리 제출한다.
- ② 평가위원은 평가단 주요 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계획 수립, 평가방법의 검토, 평가진행 및 운영사항을 논의한다.
- ③ 평가단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평가단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필요 시 각 직역의 대표는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 분석, 평가 집필에 담당할 수 있다.
- ④ 평가의 운영은 '성과기반의학교육'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평가의 목적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07. 03.]

제7조(보고서 작성)

- ① 평가단은 모든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단 구성, 평가 진행 일정, 평가의 원칙, 평가의 방법과 내용, 평가 결과 및 제언이 포함된다.

제8조(업무관장 및 재정)

평가단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평가단 인력의 인건비는 학교의 교내외 인건비 지출 요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보고의무)

평가단은 평가의 시작 시 평가 계획, 평가 시작 후 1개월 후 진행사항, 평가 종료 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질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5. 07. 03.]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단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평가인증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방문평가 및 중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평가인증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과대학 평가인증 관련 규정 및 체계 마련
2. 자체평가 업무 행정지원
3. 자체평가 업무 예산확보
4. 이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요청하는 평가인증의 관련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보직 교수와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학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무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별도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평가인증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06. 08. 09.

개정 2008. 09. 01.

개정 2013. 12. 0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방문평가 및 중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평가인증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03.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과대학 평가인증 준비 및 수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업무 수행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연구위원, 자문위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영역별 위원을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② 위원장은 보직 교수 1인을 학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평가 인증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③ 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역별 소위원회를 평가영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위원의 교체는 2/3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따른 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별도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9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의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07. 03.]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07. 03.]

1.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평가지표 관리[개정 2025. 07. 03.]
2.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과정 평가[개정 2025. 07. 03.]
3.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수업 평가[개정 2025. 07. 03.]
4.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개정 2025. 07. 03.]
5. 재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개정 2025. 07. 03.]
6. 이외 교육혁신 정책 사업으로 학장이 의뢰한 사항 [개정 2025. 07. 03.]

제3조(임원) ① 센터장은 질관리위원장이 되며,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 03. 31.]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연구원 및 직원 등) ① 센터에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소속인 직원(계약직 포함) 및 조교를 학장이 임명(업무분장 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내외 의학교육 전문가와 보직교수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07. 03.]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집행, 평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구성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예산)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예산을 활용한다.[개정 2025. 07. 03.]

1. 대학교 지원금(교비 포함)
2. 의과대학 발전기금
3. 대학병원 교육 지원금
4. 기타 정책 재원

제7조(활동경비) 센터의 임원 및 구성원 등에게는 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세미나 등 참석비용 및 여비, 간담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진료능력개발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4.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에 기반을 둔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진료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5. 03. 31.]

제2조(업무) 센터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07. 03.]

1.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임상 술기와 진료 수행 교육과정 운영
2. 임상실습의 술기 교육 보조, 실기 국가고사 모의 시험과 컨소시엄 참여
3.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의 실기 시험 준비와 응시
4. 이외 교내외 의료 술기와 관련한 교육정책 사업

제3조(모의 진료 프로그램)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07. 03.]

1. 모의 환자(표준화환자) 모집 및 훈련
2. CPX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3. 진료수행 수행 수준 분석 및 피드백
4. 진료 수행 평가위원 교육 및 활용
5. 이외 모의 진료 수행과 관련한 행정 및 재정 업무

제4조(인력 구성) 센터 인력구성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07. 03.]

- ① 센터장 1인은 술기교육 경험이 있는 자로 학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센터에 술기는 필요시 실무 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④ 실무교수와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⑤ 교내외 술기 교육과 전문가를 별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학교의 통상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07. 03.]

-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내외 의학교육 전문가와 보직교수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집행, 평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구성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예산을 활용한다.[개정 2025. 07. 03.]

1. 대학교 지원금(교비 포함)
2. 의과대학 발전기금
3. 대학병원 교육 지원금
4. 기타 정책 재원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5. 학생상담실 운영 규정

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상담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상담 관련 기본 계획 및 수립
- ② 상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③ 의예 의학과 학생들의 심리 검사
- ④ 의과대학 내의 상담 업무의 평가
- ④ 의과대학 내의 상담기구의 협조체계 구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연구교수,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상담실은 필요시 객원 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③ 연구교수는 이용자들의 각 전문분야 상담, 학생지도, 연구 책임 및 상담과 소관 업무를 한다.
- ④ 연구원은 센터 이용자들의 상담, 심리검사 및 교육 등 센터의 상담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학생상담 관련 조사와 연구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예산과 경비)

- ① 학생 대상의 기본 심리검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매해 예산심의를 통해 교비로 지출한다.
- ② 상담실 업무 추진을 위해 매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 진행한다.
- ③ 상담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과대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객원 상담의 지급 비용은 외부 상담비용에 준한다.

제5조(보고의무) 상담사는 내담자 혹은 타인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실장 혹은 보직 교수 1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외 상담실 운영은 상담에 관한 상담사 윤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기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6. 의과대학 학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12. 26.

개정 2019. 12. 18.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후보 선출) 학장후보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교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학장임용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장 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학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무)

- ① 위원회의 위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의 상시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의 교원 각 1인을 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회무 및 관련 업무를 기록·보존한다.
- ④ 위원회는 선거사무 및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당국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 당국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장임용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집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학장후보자가 학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5조(고유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 학장 임용후보 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
- ② 전체 전임교수의 선거관리

제6조(학장후보대상자의 자격) 학장 임용후보 대상자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행정능력과 지도력이 있는 자
- ②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추, 학문적인 업적)
- ③ 의과대학 보직으로 봉사한 적이 있는 자[개정 2025. 07. 03.]
- ④ 학장의 법정임기 동안 재직할 수 있는 자
- ⑤ 교수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7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① 선거일시 및 장소의 공고
- ②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 ③ 투·개표에 관한 업무
- ④ 선거장소 및 투·개표장 관리
- ⑤ 입후보자 등록 심사 및 공고
- ⑥ 선거 결과의 공고
- ⑦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심사
- ⑧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제9조(선거권)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이상의 교원은 학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휴직자 및 해외 체류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10조(피선거권)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1조(선거시기)

- ① 선거 시기는 학장의 임기 만료 30-60일전으로 하며, 선거일시는 학장임용 후보 추천위원회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학장이 임기 만료 이내에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학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선거 1주일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공고한다.

제13조(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는 투표 1주일 전에 의대 교학과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14조(학장 입후보 등록) 학장 입후보자는 다음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투표 14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① 학장 후보자 지원서 1부
- ② 이력서 1부
- ③ 의과대학 발전계획서 1부
- ④ 공정선거 서약서 및 윤리서약서 1부
- ⑤ 의과대학 관련 보직 경력 증명서 1부 [개정 2025. 07. 03.]
-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개정 2025. 07. 03.]

제15조(참관인)

- ① 학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시에 참관인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장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소견발표)

- ① 학장 입후보자는 등록시 소견서나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과 이메일 발송용으로 제출한다. 이때 위원장은 이 자료를 선거권자에게 서면 내용을 배부하고 또한 이메일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위원회를 통해 소견 발표를 서면과 이메일로 발표해야 하며, 발표는 선거기간 중 각 2회 이내로 한다.

제17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별표 제1호의 양식으로 한다.

제18조(투표용지교부) 위원회는 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9조(투표방법 및 장소)

- ① 투표방법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투표도 시행할 수 있다.
- ② 투표는 1인 1매로 하고, 투표용지에 해당 지지자 1인을 기표한다.
- ③ 투표장소는 선거전에 본 위원회에서 학장실로 지정하여 실시하며 그 외 위원회에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추가지정 장소는 교원이 상시 근무하는 곳이어야 한다.[개정 2025. 07. 03.]

제20조(개표 및 보관)

-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실시한다. 추가지정 장소에서 실시된 투표의 개표는 해당 장소의 위원이 시행한 후 그 내용은 추후 위원장에게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으로 공지한다.[개정 2025. 07. 03.]
- ② 위원장은 학장임용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회의를 산회하여서는 안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선거연기를 선언하고 가능한 한 최단시일 내에 선거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개표 후 투표함 및 투표용지를 학장 임용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 ① 위원장의 직인이 없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기타 위원회가 무효로 판정한 경우

제22조(당선자의 결정)

- ① 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후보자를 임용추천 1순위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임용추천 1순위로 한다.
- ③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상위 득표 순서대로 1, 2순위를 임용추천대상자로 확정한다.
- ④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총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그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확정한다.[개정 2025. 07. 03.]
- ⑤ 후보자가 없을 때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학장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고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개정 2025. 07. 03.]

제23조(임용후보자 당선 공고) 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24조(이의신청)

-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전체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선거 무효 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5조(재선거) 선거 무효가 확정되거나 당선된 학장임용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 중 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조(입후보 사퇴)

- ① 학장 입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② 학장 입후보자의 사퇴는 투표일로부터 3일전까지는 이를 인정하되 그 이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투표결과 통보) 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지체없이 학장임용후보자를 공고하고 이를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후보자 추천) 학장은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임용후보자를 지체없이 원광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공명선거에 반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① 입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
- ② 선거 벽보,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 ③ 신문, 잡지, 각종 출판물, 방송이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
- ④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행위
- ⑤ 기타 공명선거에 반하는 행위

제30조(개정) 이 규정은 전체교수 3분의 1이상의 서면발의가 있고,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25. 07. 03]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제정 당시의 학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제정 당시의 학장 후보 선거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7.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3. 29.

1차 개정 2014. 04. 11.

2차 개정 2018. 06. 11.

3차 개정 2019. 03. 01.

4차 개정 2021. 12. 29.

5차 개정 2025.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동기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 기자재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자재 구매 및 도입된 기자재의 관리, 유지, 보수, 사용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자재의 폐기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의학연구를 위한 공동기기실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9., 개정 2025. 07. 03.]
8. 핵심연구지원센터(코어센터)내 기기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9.]
9. 기타 공동기기실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개정 2021. 12. 29.]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12. 29.]

-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핵심연구지원센터(코어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9.]
-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초의학교실 대표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07. 03.]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4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6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7월 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7. 03. 29.

1차 개정 2014. 04. 11.

2차 개정 2018. 06. 11.

3차 개정 2019. 03. 01.

4차 개정 2021. 12. 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라 공동기기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2조(조직 및 업무 분담)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부, 기구부, 소모품부의 3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각 분야는 운영위원 중 분야별 책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업무 분담

1. 관리 분야는 매뉴얼 관리, 화재 및 도난 예방,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2. 기구 분야는 기구의 관리, 보수, 사용 교육을 담당한다.
3. 소모품 분야는 소모품의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3조(조교 및 실험기사) ① 공동기기실의 행정적 관리 및 실험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와 실험기사를 두어 상주하도록 한다.

② 조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공동기기실의 모든 행정사무를 보조한다.

③ 실험기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임명하고 실험 기자재의 운영, 관리를 보조한다.

제4조(공동기기실 사용) ① 사용 대상자는 의과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병원 전공의 및 직원으로 한다. 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공동기기실 사용을 원할 경우 공동기기실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②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자재 사용 일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자재 사용 도중 고장 및 파손 되었을 때는 기구분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③ 소모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소모품의 종류 및 수량을 소모품 담당책임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그 내용을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④ 소모품 사용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사용대상자는 실험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공동기기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소모품의 관리 및 유지) 실험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와 관리 유지비는 소모품 사용료, 교비, 대학병원 지원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부 칙

본 운영 세칙은 199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4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8월 1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실험동물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9. 03. 0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실험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 사육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 사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 사육시설 관리인의 지도 및 감독
5. 기타 실험동물 사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학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초의학교실 대표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의과대학 교수복지회 규정

제정 2013. 03. 01.

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칙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21. 12. 29., 개정 2025. 03. 31.]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경조상문, 의과대학 교수들의 권익과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둔다.[개정 2021. 12. 29.]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2. 29.]

1. 회원의 경조상문
2. 회원 복지를 위한 지원
3.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지원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구성) 본회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직하는 전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03. 31.]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 의과대학의 전임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며, 퇴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일정 액수의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한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개정 2021. 12. 29.]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시행규칙 개폐에 관한 사항

3. 감사선출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9.]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1. 12. 29.]

제1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 회의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성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 본회의 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총무이사 1명
4. 이 사 6명

제15조(회장 및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하고, 의과대학 학장이 당연직이 된다.
 2. 부회장은 교무부학과장과 의대교수협의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 부회장 중 교무부학과장이 상임 부회장이 되며, 회장 유보 시 회장의 직무대행을 한다.[개정 2025. 03. 31.]

제16조(총무이사) 총무이사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회장과 의대교수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2. 총무이사는 본회와 의대 교수협의회 회계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감사) 감사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9.]

1. 감사 2인은 이사회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이사) 이사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9.]

1. 이사 6명은 회장과 교수협의회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19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제20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사업수입금
3. 보조금
4. 기타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원광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복지회 회칙
2. 회의록
3. 회계관련 서류 (영구보존)
4. 공문 수불 대장 및 공문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 의과대학 교수복지회 급여금 항목

제1조(목적) 이 지급 항목은 의과대학 교수 복지회 회칙 제4조의 각종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2013년 03월 01일 현재 월 1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조(경조금 지급) 경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

1. 축의금
 - 가. 회원 결혼 20만원
 - 나. 회원 정년퇴임 100만원@퇴임식을 할 경우에 한하여 축의금 100만원에 화환(10만원)을 추가한다.
 - 다. 자녀 결혼 10만원
2. 조의금: 100,000원 상당의 조화
 - 가. 회원사망 100만원
 - 나. 배우자 사망 50만원
 - 다. 부모/장인장모 사망 30만원
 - 라. 자녀 사망 50만원
3. 위문금
 - 가.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질병(입원) 10만원@입원 위문금은 동일질병명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한다.
 - 나. 회원 퇴직
 - ① 10년 이상 근무자 30만원
 - ② 20년 이상 근무자 50만원

제4조(기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은 지출한다.

1. 교수 복지회 장학금 400만원
(본1~본4; 각학년 1명, 학기별 50만원/명, 극빈자 우선)
2. 장기해외연수(1년 이상의 경우로 1회 한함) 20만원
3. 박사학위취득 20만원
4. 전국규모학회(본교에서 거행 시) 화환(10만원 상당)
@원광대학교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학회에 한함.
5. 기타공로패 및 대외경조사비 10만원 이하
6. 교수회식비 (전체교수회의 후 회식에 한함) : 적정금액
7. 의대교수협의회 지원 : 적정금액
8. 의대발전을 위한 사업 : 적정금액
9. 학장단 지원금 : 연 150만원

제5조(지급심의)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 학장과 의대교수협의회장이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0만원 미만은 학장 혹은 의대교수협회의장의 승인 후 사용하고, 30만원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20. 대학원 의학과 위원회 규정

제정 1996. 10. 01.

개정 1999. 03. 01.

개정 2021. 12.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학원의 의학과 운영의 관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위원회는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의과대학내에 둔다.

제3조 (구성 및 임무) 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의학과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는 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주임교수는 학사 및 대학원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9.]

제4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29.]
2. 학과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29.]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29.]
5. 기타 대학원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2월 1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학사운영지침

제정 2020. 09. 01

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12. 23

개정 2024. 12. 09

제1조(목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제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의 학사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및 전공)

① 석사 및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며 의생명과학전공의 단일 전공으로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단일전공 내 다음 각 호의 세부전공을 둔다.

1. 분자의생명
2. 신경의생명
3. 종양의생명
4. 의생명공학

② 학위과정 내 편성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23]. 각 학위과정별로 세부전공과 상관없이 이수해야하는 공통과목, 전공필수 교과목을 둔다[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12. 23].

③ 세부전공의 폐지나 신설은 의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조(입학시험 및 모집인원)

의생명과학과 입학시험과 신입생의 모집인원은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

- ① 의생명과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 업무를 위해 의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가 되며 간사 1명 및 각 세부전공 별로 위원을 한 명씩 둔다.
-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 심의
 2.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 사항 심의
 3. 학위청구논문 관련 제반 사항 심의
 4. 의생명과학과 학사운영지침의 개정 사항 심의
 5. 교육과정 관련 제반 사항 심의
 6. 학기별 교과목 개설 사항 심의
 7. 연구실 순환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제5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연구실 순환을 통해 최종 학위연구실과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 최종 학위연구실

과 지도교수를 선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자격, 배정시기, 공동지도교수 등 그 외에 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연구실 순환)

①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최소 두 개의 연구실에서 연구실 순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 최종 학위연구실과 지도교수를 선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실 지도교수는 연구실 순환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연구실 순환을 마친 학생은 첫 학기 이내에 의생명과학과 소속의 교수 중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의생명과학과 연구실을 우선으로 순환하되,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연구실 순환도 가능하다.

제7조(연구윤리 준수)

①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모든 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교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대학원의 지침에 따른다.

제8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②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 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시험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1. CBT 170점 이상인 자
2. TOEIC 700점 이상인 자
3. TEPS 501점(NEW TEPS 268점) 이상인 자
4. IBT 70점 이상인 자
5. TOPIK 3급 이상인 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④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서는 2020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졸업 전까지 의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졸업종합시험)

①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개정 2021. 11. 26],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각 학위과정 별 수료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7학점)을 취득 예정 혹은 취득한 자여야 한다.

③ 다만, 논문지도 및 작성법 I, II [개정 2024. 12. 09.]를 제외한 공통과목(분자세포생물학)을 포함해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2과목,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3과목을 포함[개정 2022. 12. 23, 개정 2024. 12. 09] 시키는 것으로 하되[개정 2021. 11. 26], 박사과정의 졸업 종합시험은 해당 학생의 세부전공을 반영한 시험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 및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중간발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석·박사과정은 2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초에 지도교수 지도 하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중간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까지 논문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학과 교수 및 학위과정생 등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구두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위 항의 중간발표는 학과의 학위논문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석·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각 과정별 수료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7학점)을 취득 예정 혹은 취득하였으며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완료해야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에 동물 및 인간 대상 연구가 포함된다면 동물실험승인서와 IRB 승인서(사본 인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석사과정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 중 최소 1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저자로 1건 이상의 학술대회발표
 2. 주저자로 국내 등재지 혹은 국제저널(SCIE) 논문 1편 이상 게재 확정
 3. 국내/국제 특허등록은 국제저널(SCIE) 주저자로 인정
- ⑤ 박사과정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 중 최소 1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저자로 국제저널(SCIE) IF 5.0 이상(IF는 게재일 기준)
 2. 주저자로 국제저널(SCIE) 논문 2편 이상 게재 확정
 3. 국내/국제 특허등록은 국제저널(SCIE) 주저자로 인정. 단, 특허등록만으로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 ⑥ 주저자 논문의 인정은 지도교수가 논문에 저자로 등록된 경우로 제한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 작성과 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박사 학위 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 ② 지도교수는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3인, 박사과정의 경우 5인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 ④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 ② 예비심사
 1. 예비심사는 각 학위과정 공히 1회 이상 심사위원 공개 심사한다.
 2.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의 제청에 따라 지도교수가 지도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

1. 본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적인 타당성을 가려 판정한다.
2. 최소 1회 공개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에 한해 인정되며 발표 사진과 발표 자료(PPT, PDF 등)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은 최소 20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최소 40분으로 공개 구두 발표를 진행하며, 박사과정은 영어로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26].

제15조(기타 사항)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제반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20학년도 9월 1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학년도 3월 1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학년도 3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3항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입학 대학원생부터 적용한다.